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40

제출년월일 : 2025. 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마포구 조직개편에 따른 구립도서관 운영주체 변경 및 관련 조항을 정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적용

나.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구립도서관 관리부서 변경 및 관련 조례 정비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내용 일치

·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변경

라. 다자녀 가족 기준 완화로 인한 감면 대상 확대 및 비율 변경 등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서관법」

2)「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3)「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3. 13. ~ 2025. 4. 2.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5)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25. 4.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서관 자료”란 법 제2조제2호”를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28조”를 “법 제32조”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장”을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구청장”을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하고, 제4호 중 “관장”을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장”을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이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용료 등을 수탁자”를 “이용료 등을 수탁자”로, “사용료 등을 도서관”을 “이용료 등을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 등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를 “이용료 등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서관의”를 “누구든지 도서관의”로,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라 이를 접수”를 “기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청장 또는 관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 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 또는 관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표도서관장”을 “소관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표도서관장, 총무·기획예산·문화·교육 관련”을 “소관부서장, 행정·정책·문화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하고”를 “하되”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별표 및 별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 등의 부과 · 감면 · 환급 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가. 부과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원)
마포중앙 도서관	다목적강당	1회 3시간	450,000
	세미나실	1회 3시간	330,000
	집필실	1개월	150,000
	피아노	1회 3시간	15,000
서강도서관	세미나실	1회 1시간	10,000
소금나루 도서관	세미나실, 동아리실	1회 1시간	5,000
	다목적강당	1회 1시간	15,000

1)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시간당 사용료를 초과시간에 따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토요일 및 공휴일(휴관일 포함)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3)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준 사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시간당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3시간에 한한다.
4) 냉·난방비는 무료로 한다.

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마포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70%
마포구 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마포구 내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장애인·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 또는 마포구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0%

※ 중복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함

※ 감면은 시설사용료 부과금액 총액에 대해 적용함

2. 수강료

가. 부과기준

구 분	수강료	비 고
독서문화프로그램	월 35,000원 이하	
어린이영어프로그램	월 60,000원 이하	
1) 운영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3) 어린이영어프로그램은 어린이영어도서관에 한한다.		

나. 감면기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 가정(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가족)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5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감면 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만 적용 3) 다자녀 감면은 1가정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별지 서식]

<table>
<tr><td colspan="6" rowspan="2">마포구립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td><td colspan="2">처리기간</td></tr>
<tr><td colspan="2">30일</td></tr>
<tr><td colspan="2">신청인
(법인명)</td><td colspan="4"></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2">소 재 지</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대표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법인설립일자</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 rowspan="2">자산현황</td><td>고정자산</td><td colspan="5">천원</td></tr>
<tr><td>유동자산</td><td colspan="5">천원</td></tr>
<tr><td colspan="2">위탁기간</td><td colspan="6">. . 부터 . . 까지(년간)</td></tr>
<tr><td colspan="8">「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마포구립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5">1. 법인 정관(규약)과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 각 1부.
2. 법인 임원 및 자산현황 각 1부.
3. 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서 각 1부.
4. 운영실적 및 인력.장비 등 확보계획서 각 1부.
5. 그 밖에 법인 홍보자료 등 각 1부.</td><td colspan="2">수수료

없음</td></tr>
</ta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재 및 명칭) ① (생 략)	제2조(소재 및 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구분하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제4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도서관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1.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용료 등"이란 도서관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 및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정보 등을 복사 또는 인쇄하거나, 그 밖에 회원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이용료 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제5조(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대표도서관이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표도서관 내에 구민의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32조----------.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 및 관리) ①·② (생 략) <신 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두며, 도서관 강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어민 강사 등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	<삭 제>

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대상) ① (생 략)	제8조(이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장----------.
제9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자료 중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대출) ① 구청장 또는 관장----------. 1.·2. (현행과 같음) 3. ----- 구청장 또는 관장----- ② ---------- 구청장 또는 관장----------.
제10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지역문화 창달 및 구민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도서	제10조(문화활동의 전개) 구청장 또는 관장----------

관 강좌 개설 및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의2(독서·문화 활동 지원)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교육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사·추첨 등의 방법으로 1인당 2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의2(독서·문화 활동 지원) 구청장 또는 관장----------.
제11조(시설 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관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설 사용허가) ① ---------- 구청장 또는 관장 ----------. ② ---------- 구청장 또는 관장----------. ③ 구청장 또는 관장----------. 1. ~ 3. (현행과 같음) 4. ---------- 구청장 또는 관장----------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구청장 또는 관장----------

허가를 취소·중지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 4. (현행과 같음) 5. ---------- 구청장 또는 관장 ----------
제13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사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된 사용료 등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 등의 수입·지출 내역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등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금액·감면기준·환급규정 등을 별표와 같이 정하되, 별표의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	제13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 또는 관장---------- 이용료 ----------. ② ---------- 이용료 등을 수탁자---------- 이용료 등을 도서관 ----------. ----------이용료 ---------- ----------. ③ 이용료 등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삭 제>

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별표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15조(기부·기증·기탁) ①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기부·기증·기탁)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 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 또는 관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은 국제적인 기구의 발간물이나 마포구 지역 사료와 같이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관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국장,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으로 한다.	② ----------소관부서장---------.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 대표도서관장, 총무·기획예산·문화·교육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	③ ----------소관부서장, 행정·정책·문화 관련 ----------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관계 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 하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 2명	2. 구의회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

현 행

[별표]사용료 등의 부과 · 감면 · 환급 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1.시설사용료

가. 부과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원)
마포중앙 도서관	다목적강당	1회 3시간	450,000
	세미나실	1회 3시간	330,000
	갤러리	1일	300,000
	소규모강의실·토론방	1회 1시간	10,000
	집필실	1개월	150,000
	피아노	1회 3시간	15,000
서강도서관	세미나실	1회 1시간	10,000
소금나루 도서관	세미나실, 동아리실	1회 1시간	5,000
	다목적강당	1회 1시간	15,000

1)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시간당 사용료를 초과 시간에 따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 간으로 본다.
2) 토요일 및 공휴일(휴관일 포함)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3)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준 사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시간당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3시간에 한한다.
4) 냉 · 난방비는 무료로 한다.

※ 중복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함
※ 감면은 시설사용료 부과금액 총액에 대해 적용함

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마포구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70%
마포구 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마포구 내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 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장애인 · 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 또는 마포구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0%
갤러리를 10일 이상 장기대관하는 경우	

개 정 안

[별표]이용료 등의 부과 · 감면 · 환급 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가. 부과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원)
마포중앙 도서관	다목적강당	1회 3시간	450,000
	세미나실	1회 3시간	330,000
	집필실	1개월	150,000
	피아노	1회 3시간	15,000
서강도서관	세미나실	1회 1시간	10,000
소금나루 도서관	세미나실, 동아리실	1회 1시간	5,000
	다목적강당	1회 1시간	15,000

1)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시간당 사용료를 초과시간에 따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토요일 및 공휴일(휴관일 포함)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3)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준 사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하며, 시간당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3시간에 한한다.
4) 냉 · 난방비는 무료로 한다.

※ 중복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함
※ 감면은 시설사용료 부과금액 총액에 대해 적용함

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마포구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	70%
마포구 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마포구 내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장애인 · 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 또는 마포구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0%

2. 수강료

가. 부과기준

구 분		수강료	비고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독서문화 프로그램	월35,000원 이하	
	어린이영어프로그램	월60,000원 이하	
특기적성프로그램		월125,000원 이하	

1) 운영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중 어린이영어프로그램은어린이영어도서관에 한한다.

나. 감면기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10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7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 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5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개정 2020.7.9.〉	50%	30%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2. 수강료

가. 부과기준

구 분	수강료	비고
독서문화프로그램	월35,000원 이하	
어린이영어프로그램	월60,000원 이하	

1) 운영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3) 어린이영어프로그램은 어린이영어도서관에 한한다.

나. 감면기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 가정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가족)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5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개정 2020.7.9.〉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감면 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항목만 적용
3) 다자녀 감면은 1가정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별지서식

마포구립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법인설립일자				
자산현황	고정자산	천원		
	유동자산	천원		
위탁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마포구립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법인 정관(규약)과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 각 1부. 2. 법인 임원 및 자산현황 각 1부. 3. 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서 각 1부. 4. 운영실적 및 인력.장비 등 확보계획서 각 1부. 5. 그 밖에 법인 홍보자료 등 각 1부.	없음

별지서식

마포구립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법인설립일자				
자산현황	고정자산	천원		
	유동자산	천원		
위탁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마포구립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법인 정관(규약)과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 각 1부. 2. 법인 임원 및 자산현황 각 1부. 3. 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서 각 1부. 4. 운영실적 및 인력.장비 등 확보계획서 각 1부. 5. 그 밖에 법인 홍보자료 등 각 1부.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별표]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기준 - 2. 수강료 - 나. 감면기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체육국 평생학습과 김은채
연 락 처	02-3153-5812